

안산시근로자·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2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10만여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건립중인 「안산시 근로자·시민문화센터」가 '04. 10월 준공(예정)됨에 따라,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문화센터의 기능을 정함 (안 제3조).
- 나. 문화센터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.
- 다. 시설사용료를 정함 (안 제6조, 별표).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내지 제45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연 413,321천원(내역 별첨)

□ 사전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04. 8. 5. ~ 2004. 8. 25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안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 : '04. 7. 9.

안산시근로자·시민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위치)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은 “안산시근로자·시민문화센터”라 하며,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 – 9번지에 둔다.

제3조 (기능) 안산시근로자·시민문화센터(이하 “문화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근로자의 전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
2.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 사업
3.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
4. 기타 근로자·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·체육사업

제4조 (운영) ①문화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(양도 및 전대금지) 문화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·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 (이용 및 사용허가 등) ①문화센터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 및 시민 누구나 이를 이용하거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외 근로자 및 주민에게도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③시장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후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시 관내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.

제7조 (사용제한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1. 긴급을 요하거나,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
2. 시설 등의 사용과 관련된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
3.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
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센터에의 입장을 제지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.

1. 정신질환자, 전염성질환자, 만취자
2.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
3.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문화센터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
제8조 (사용료 면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
2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9조 (강사)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0조 (지도감독)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지원센터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업지원센터 소장 유동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정담당 양영철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정삼 (행정 2843)

안산시근로자·시민문화센터 시설 사용료(제6조제2항 관련)

구분	사용기준	사용료(원)	비 고
다목적실(강당)	1일 2시간	50,000	
부대 시설	영사기	20,000	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마다 기본 사용료의 25% 가산
	조명시설	20,000	
중소회의실	-	10,000	
체육시설	월 / 1인	20,000	
취미·재취업교실	월 / 1인	무료	-
시민도서실	-	무료	-
수익사업시설 (구매시설)	-	(전용면적+공용면적) x 감정평가액 x 50/1,000	안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
주차료	-	30분당 500원	문화센터 사용시 최초 1시간 무료